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05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650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4월분 등록세 23,760,000원, 7월분 취득세 23,155,140원, 2011년 6월분 등록세 19,316,880원 및 취득세 16,097,4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업장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면분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 3. 1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D을 명의상 대표자로 변경하여 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 7. 18. 다시 원고를 대표자로 변경한 사정이 있을 뿐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당해 재산을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09. 12. 3. E요양센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1. 2. 19.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백만 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2. 28.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2011. 3. 2. 피고에게 폐업 일자 2011. 3. 4.로 하여 노인요양시설 폐업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소외 D에게 2011. 3.부터 2011. 8.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제3자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 인증서 기재에 비추어 원고는 폐업신고를 한 2011. 3. 4. 이후에도 소외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 입소자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그에 대한 관계기관의 증명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인 원고가 소외 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시설이 무료노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피고가 2009. 12. 29.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을 원고에게 환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020호로 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11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어 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부칙<제5062호, 2010. 12. 31>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